

[검토보고서]

2015. 9. 21(월) 제 2 6 1 회 임 시 회

양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



양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○ 제안자 : 양주시장(지역경제과)

○ 제출일 : 2015년 9월 7일

○ 검토일 : 2015년 9월 8일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구 「소비자보호법」이 「소비자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 중심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소비자기본법」개정에 따라 제명을 "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"에서 "양주시 소비자기본조례"로 개정함.
- 소비자보호 위주의 기존 조례를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향상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함.
- 상위법령인 「소비자기본법」의 위임 없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.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양주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양주시장의 책무 등을 정한 자치조례이며
- 개정안은 「소비자보호법」이 「소비자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¹)에서는 "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 제1항²)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"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나. 정책 및 내용검토

○ 현행 제4조, 제11조, 제12조, 제4장,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등은 사업자 또는 시민·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³) "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"는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

¹⁾ 제3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^{1.}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

^{2.}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

^{3.}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·권고·공표 등

^{4.} 소비자단체·소비자생활협동조합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

^{5.}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·운영 등

^{6.}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

^{7.}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

²⁾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

^{1.}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· 폐지

³⁾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현행 제8조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소관사무로 처리방법과 절차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음.
- 그 외에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다. 형식검토

○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라. 절차검토

○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